

1.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(소법§119·법법§91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</p> <p>○ 총지급액에 대하여 분리과세 (지급금액의 20%)</p> <p>* 전문인적용역 :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회계·기술지원·경영자문등의 용역</p>	<p>○ 항공료·숙박비·식비 등 실비변상적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</p> <p>- 전문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(개인)의 경우 종합과세방법 선택 가능</p>

<개정이유>

-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시 실제 발생하는 경비는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국제적 과세기준 도입
- 추가로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 완화
- *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는 문제는 많은 세무행정력(경정청구 → 환급결정등)이 소요되므로 개정안의 도입효과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검토

<적용시기> 2006.1.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2.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불복청구 기간의 특례 적용(국조법§24, 국조령§40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불복청구기간 특례</p> <p>○ 불복청구기간(90일)을 계산함에 있어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불복청구기간에 불산입</p> <p>- <u>청구기간(90일)내 관할세무서장·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적용</u></p>	<p><삭 제> *신청이 없더라도 불복청구기간 특례 인정</p>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특례</p> <p>○ 결정기간(90일)내 관할세무서장·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적용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행과 동일</p>

<개정이유>

- 불복청구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된 사건이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불복청구기간 특례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납세자의 신청요건 폐지

<적용시기> 2006.1.1 이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3.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(소법§156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</p> <p>○ 양도차익의 25% 또는 양도금액의 10%중 큰 금액</p>	<p>□ 비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</p> <p>○ 비거주자가 양도시기 이전에 미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</p> <p>○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미달·비과세 등의 확인서</p>

<개정이유>

-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 발급시 경유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의 안내에 의하여 미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음
 - 이와 같이 비거주자가 미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수자가 다시 원천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하는 것임
- 따라서 비거주자가 미리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
 - 과세미달·비과세등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원천징수 면제

<적용시기> 2006.1.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

4.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절차 간소화(조특법§121의 2⑬신설, §121의4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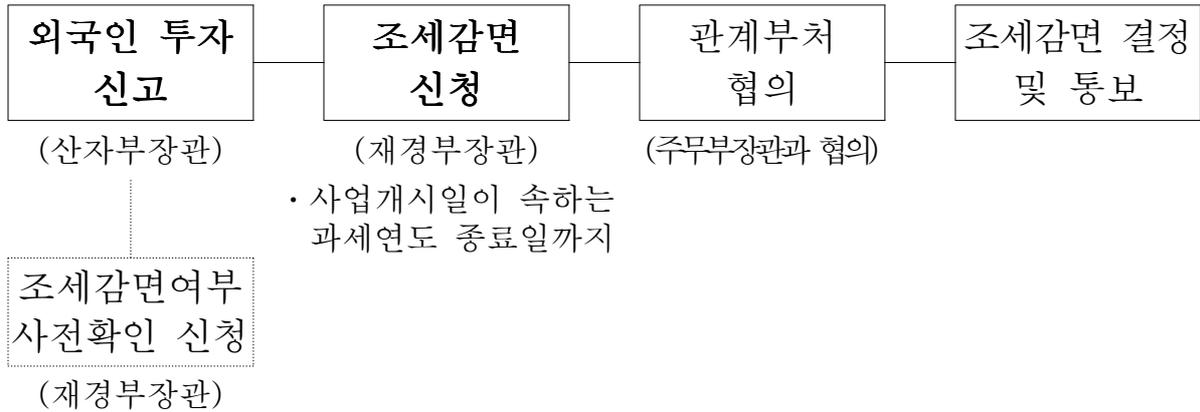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(안)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투자 신고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</p> <p>○ 조세감면결정 금액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증자하는 경우</p> <p>○ 증자시마다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함</p>	<p>○ 조세감면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면제</p>

<개정이유>

- 외국인투자 신고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
 - 증자시마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이 법 시행일 이후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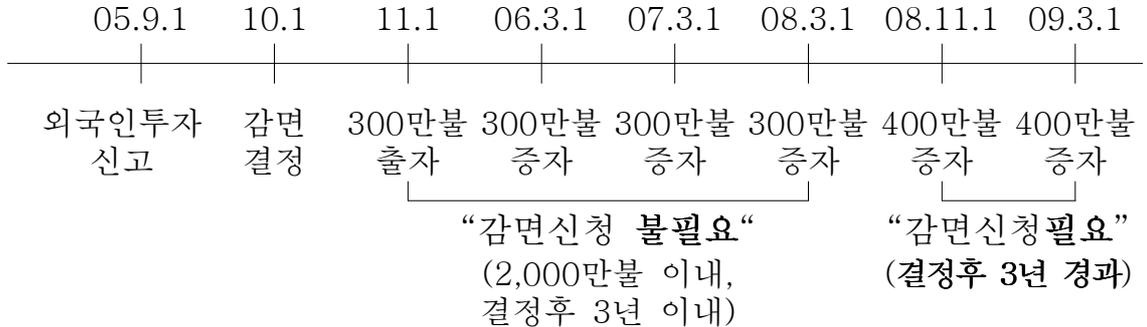
< 참고 1 > 외국인투자시 조세감면 신청 및 결정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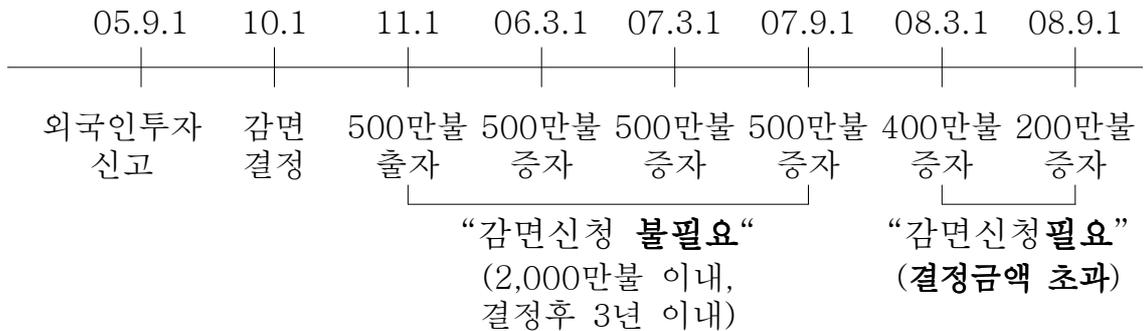
< 참고 2 > 구체적 事例

□ 외국인 투자신고(감면결정)금액 : 2,000만불 가정

① 감면결정일로부터 3년 경과후 증자분 ⇒ 감면신청 필요



② 3년 경과전에 감면결정금액을 초과하는 증자분 ⇒ 감면신청 필요



5.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소급적용 범위확대(국조법 §6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</p> <p>○ 쌍방의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한 때 소급적용 허용</p>	<p>○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소급적용 허용</p> <p>- 다만, 남용방지를 위해 경정청구기간(3년)이내의 것만 허용</p>

<개정이유>

□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(APA: Advanced Pricing Arrangement) 제도란

○ 납세자가 국세청에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를 거쳐 승인하는 제도

- 다만, 납세자가 사전승인 신청시 상호합의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인 가능(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함)

*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: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

□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소급적용을 허용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비용절감을 유도

○ 「불필요한 세무조사 방지」라는 APA제도의 취지와도 부합

- 다만, 남용방지를 위해 사전승인일 현재 경정청구기간(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)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적용

<적용시기> 2006.1.1 이후 최초로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